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-198호

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09호(2015.07.16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21호(2020.05.28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-175호(2020.09.24.)로 추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영등포구 신길동 116-15번지 일대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9조제1항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0조제1항 각호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021년 10월 7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영등포구 신길동 116-15번지의 2필지
 - 나. 시행면적 : 4,592.0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명 칭 :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조합
 - 나. 주된사무소의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7
 - 다. 대표자 성명 : 조합장 김규태
 - 라. 대표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7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

■ 토지조서

연번	위 치	지 목	면 적(㎡)		도 시 계 획 시 설	소유주	용 도
			지적	편입			
계	-	-	4,609	4,592	-	-	-
1	영등포구 신길동 116-15	대	4,203	4,203	도로 (접합)	조용배 외 269인	아파트 시장
2	영등포구 신길동 116-18	대	145	128	도로 (저촉)	김택규 외 261인	아파트 시장
3	영등포구 신길동 117-5	대	261	261	도로 (접합)	김택규 외 262인	아파트 시장

※ 신길동 116-18번지의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금회 구역 내 일부편입(19.0㎡)

■ 건축물조서

연번	위치	용도	구조	동수	호수	세대수	준공 연도	규 모			비고
							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층 수 (지하/지상)	
계	-	-	-	-	-	-	-	-	-	-	-
1	영등포구 신길동 116-15 외 2필지	아파트 시장	철근 콘크리트	1	-	242	1971. 02.04	3,424.64	12,129.36 (지상 10,028.92)	1/5	-

6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가. 구역면적 : 4,592.00㎡(대지면적 : 4,262.00㎡)

나. 건 폐 율 : 58.40%

다. 용 적 률 : 499.54%

라. 높 이 : 76.00m

마. 연 면 적 : 38,618.92㎡

바. 용 도 : 공동주택, 판매시설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(공공도서관)

7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구분	형별	전용면적(㎡)	세대수	유형	구성비
전용면적 60㎡미만	59	59.92	22	분양	25.29%
전용면적 60~85㎡미만	65	65.52	1		1.15%
	77	77.98	22		25.29%
	84	84.96	42		48.28%

8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종류	규모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내용
도로	330.00㎡	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조합	기부채납
공공도서관	884.44㎡	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조합	기부채납

9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·허가 등 의제처리사항

가.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나. 「도로법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

다. 「수도법」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

라. 「하수도법」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

마. 「하수도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
바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,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

사. 「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

아. 기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 됨

※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택과(☎2670-366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